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8

1999.03.01.제정 2001.03.01.개정 2004.12.01.개정 2006.03.01.개정 2011.03.01.개정 2012.02.01.개정 2012.08.24.개정 2014.03.01.개정 2016.11.01.개정 2017.09.01.개정 2019.02.14.개정 2020.03.03.개정 2020.06.19.개정 2020.09.01.개정 2020.09.2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02.24.개정 2021.12.22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공필수 과목 이수 인정)

- ① 삭제 <2004.12.01.>
- ② 삭제 <2004.12.01.>
- ③ 삭제 <2004.12.01.>
- ④ 소속학과(계열)에서 미취득 전공필수 교과목을 타 학과에서 재수강할 경우에는 교과목 명이 동일하고 학점수가 같거나 많아야 당해 과목 재이수로 인정한다.
- 제3조(미취득 과목의 재이수) ① 미취득한 과목을 재수강할 때 학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.
 - ② 삭제 <2004.12.01.>
 - ③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필수과목 미 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유보되는 학생의 경우 다음 학년도 소속 학과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당해 과목이 다른 이수구분으로 변경되거나 폐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목의 재이수를 면제하여 현재 학년도에 졸업을 허가한다.
- 제4조(복학생 수강신청 절차) 복학생은 복학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단, 복학생의 수강신청 절차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온라인강좌 수강신청 학점)** ① 학기별 온라인강좌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1학기, 2학기 : 제한하지 않음 <항 개정 2021.02.24.>
 - 2. 계절학기 : 현장실습학점 포함 6학점 이내(재수강과목 예외) <개정 2016.11.01., 2019.07.16., 2021.02.24.>
 - ② 전항의 온라인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8

- **제6조(절차)** ① 학생은 직접 강의시간표를 확인한 후 소속 계열/학과 사무실 및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서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< 삭제 >
 - 1. < 삭제 >
 - 2. < 삭 제 >
 - 3. < 삭제 >
 - 4. < 삭 제 >
 - 5. < 삭 제 >
 - <본조 신설 2012.02.01.,삭제 2019.07.16.>
- **제7조(의무)**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따라 서 그 효력도 발생한다.
 - ②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의 당해 학기 납입금은 소멸된다.
 - <본조 신설 2012.02.01.>
- 제8조(제재)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경과한 후 잘못된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한다.
 - 1. <삭제 2014.03.01.>
 - 2. <삭제 2012.08.24.>
 - 3.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 - 가.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취소한다.
 - 나, 전공과목과 자유선택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유선택과목을 취소하다.
 - <본조 신설 2012.02.01.>
- 제9조(수강신청 변경)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소정의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종료되고 당해 학기수강신청 내용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없다.
 - <본조 신설 2012.02.01.>
- 제10조(확인 및 정정) ① 학생은 학기 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조회를 통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이때, 수강신청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.
 - ② 수강신청 확정표에 이상이 없으면 수강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,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에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 - 1. 강의시간 변경(폐강, 분반, 합반 등)에 따라 수업 시간이 중복된 경우
 - 2. 수강신청조회의 내용과 수강신청 확정표의 내용이 다른 경우
 - <본조 신설 2012.02.01.>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8

- 제11조(지도) 학과(계열)장 또는 지도교수는 매학기 학생의 교과목 이수 및 수강신청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.<본조 신설 2012.02.01.>
- 제12조(계절학기의 학점이수) ① 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 이하로 하되,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이하로 제한한다. 단, 재수강과목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. <본조 신설 2012.02.01.> <개정 2014.03.01., 2016.11.01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수강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<항 신설 2017.09.01.>
- 제13조(일반 워칙)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 - ② 수강신청은 학년 및 학기 순으로 한다. 단, 편입생 및 학과 자격증과 관련 있는 교과목과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2.08.24.>
 - ③ 수강신청은 학번별 수강신청학점(2004학번부터 2016학번까지는 15학점에서 24학점까지, 2017학번부터 2018학번까지는 12학점에서 21학점까지, 2019학번 이후부터는 12학점에서 20학점까지)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와 유급생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는 계절학기운영 규정(BSKS-1-1-06)에 의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19.02.14., 2020.06.19.>
 - ④ 삭제 <2019.02.14.>
 - ⑤ 타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신청할 경우, 실험·실습, 실기, 연습 및 프로젝트 과목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02.14.>
 - ⑥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(F)으로 처리한다. <본조 신설 2012.02.01.>
 - ⑦ 단, 자격증 필수학과(사회복지아동보육과, 유아교육과 등)는 수강신청 최대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03.>
 - 8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는 소속된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최소 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. 단, 총장의 허가를 얻어 최소 수강학점 조정, 주·야간 교차 수강 등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22.>
- **제14조(성적 포기)** ① 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을 하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다. <개 정 2020.06.19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적 포기를 할 수 있다.
 - 1. 2014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(졸업학점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가능)
 - 2. 조기복학자가 조기복학하는 학기 또는 학년의 성적 전체의 포기를 원할 경우
 - 3. 재입학자가 재입학하는 학기 또는 학년의 성적 전체의 포기를 원할 경우
 - 4. 재학 중 학기 재이수 희망자가 직전 학기 성적 전체의 포기를 원할 경우
 - 5. 교육과정 변경으로 해당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유사 과목 혹은 명칭변경 과목이 없는 경우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8

- 6. 전과를 하여 전과를 하기 전 학과 교과목 취득학점이 불필요한 경우(전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) <본조 신설 2014.03.01.>
- 7. 휴학자가 복학시 소속학과가 폐과된 경우
- ③ 자퇴, 휴학, 제적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한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, 학점 포기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포기 이전의 성적을 보유한다.
- 제15조(성적포기 시기 및 절차) 본 규정 제1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성적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대학이 공고하는 신청기간에 교무처에 방문하여 신청절차에 따라 [별지 1호] 서식에 의거 성적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**제16조(재수강)** ① 재수강은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+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, 재수강 하여 취득하는 성적등급은 최대 B+까지로 제한한다. <호 개정 2020.06.19., 2020.09.24.>
 - ② 재수강은 동일 과목 또는 명칭변경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,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.
 - ③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시에는 재수강 신청으로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하며, 재수강 이전 성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.
 - ④ 재수강신청 학점은 본 규정 13조 3항의 학번별 수강신청 학점 범위에 포함된다. 다만 계절학기는 계절학기운영 규정(BSKS-1-1-06)에 의한다. <호 개정 2016.11.01., 2019.02.14.>
 - ⑤ 자퇴, 휴학, 제적으로 재수강을 신청한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, 재수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수강 이전의 성적을 보유한다.
- 제17조(재수강 시기 및 절차) 재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 신청기간 및 수강정정 기간에 교무처에 방문하여 재수강신청서[별지서식 2호] 작성 후 신청절차에 따라 [별지 2호] 서식에 의거 재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조 신설 2020.06.19.>
- 제18조(재수강과목의 기 취득 성적에 대한 처리) 재수강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되며 졸업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. <조 신설 2014.03.0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8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8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며,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 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8

[별지 제1호] <표 신설 2014.03.01.>

							계	과장	부처장	처장
		성적포기	시처	서		결				
		071/	íu' ó	^`I		재				
학과(>	계열)				학	번				
성	時				학년,	/반				
연 릭	 처									
				포기	신청 고	_ 누목				
연번		과목명		학점	이	-년5	도 및 학기	l 성	적	비고
※ 성	적포기	기 요건(비고란에 혀	해당번호 :	기재)						

- 1. 2014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(졸업학점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가능)
- 2. 조기복학자가 조기복학하는 학기, 학년의 성적 전체의 포기를 원할 경우
- 3. 재입학자가 재입학하는 학기, 학년의 성적 전체의 포기를 원할 경우
- 4. 재학 중 학기 재이수 희망자가 직전 학기 성적 전체의 포기를 원할 경우
- 5. 교육과정 변경으로 당해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유사 과목이나 명칭변경 과목이 없는 경우
- 6. 전과를 하여 전과를 하기 전 학과 교과목 취득학점이 불필요한 경우(전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)
- 7. 휴학자가 복학시 소속학과가 폐과된 경우

위와 같이 취득 성적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본인: (인)

지도교수: (인)

◎ 첨부 서류 : 성적증명서 1부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13
제정일자	1999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8

과장

처장

[별지 제2호] <표 신설 2019.07.16.><개정 2020.06.19.>

			담당자	팀원
재수강	신청서	결 재		

학 과:							
학 번:							
학 년:							
성 명:							
연락처 :							
기 취득 사항							
연번	과목명	학점	이수년도 및 학기	성적	비고		
		재수강	내용				
연번	과목명	학점	이수년도 및	학기	비고		
※ 재수강	하여 학점을 취득시0	l는 재수강	신청으로 취득한	성적등급을			

위와 같이 기취득한 과목의 성적을 포기하고 재수강을 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본인 : (인)

◎ 붙임서류 : 성적증명서 1부